
	지침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페이지

목 차

- 제1장 총 칙
- 제2장 조직과 기능
- 제3장 학사 운영
- 제4장 학생 및 장학
- 제5장 재정과 회계
- 제6장 기 타

작성부서	국제교류원	제정일자	2022. 09. 05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교무학생처장	기획예산처장	사무처장	총 장
직 책	담 당					
서 명						
일 자						

	지침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원대학교 국제교류원이 설치·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 이라한다)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연수과정의 교육과정 등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보다 알찬 유 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국제교류원에 개설 운영하는 연수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해 적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조직) ① 연수과정에는 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연수과정에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직원과 한국어강사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우리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2.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해외 동포 등을 대상의 한국어 교육
3. 한국 문화 체험 학습, 역사 탐방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의 연수과정과 관련된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 연수과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제교류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기본 계획 수립
2.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 징계
4. 연수과정 운영 지침의 개정 및 폐지
5. 그 밖의 한국어 교육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h2 style="margin: 0;">지침</h2>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페이지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학사 운영

제7조(교육과정)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1. 정규과정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반<개정 2024.02.27.>
2. 특별과정 : 토픽대비반, 한국어회화반 등

제8조(수업연한) 연수과정 수업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학기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다만, 사증 발급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봄 학기 :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2. 여름학기 :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3. 가을학기 : 9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4. 겨울학기 :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하순까지

제10조(수업일수) ① 정규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0주로 하고, 그 밖의 과정의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기 1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 및 그 밖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1일
3. 방학 : 매학기 수업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학기 개강 전일까지


② 휴업일에도 필요에 따라 보충 강의·문화체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고, 비상재해 그 밖의 긴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1.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입학자 선발) 입학자는 입학전형에 의해 선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h2 style="margin: 0;">지침</h2>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페이지

정한다.

- 제14조(입학 시기)** ① 정규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부터 6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자발급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의 과정의 입학 시기는 모집할 때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마치고 입국 사증을 발급받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된 사람으로서 등록금 및 그 밖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입학을 허가한다.

- 제16조(수업시간)** ①정규과정 수업시간은 매학기 15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과정의 수업시간은 따로 정한다.


- 제17조(수업운영)** ① 정규과정 수업은 주당 15시간(1일 4시간) 이상으로 매학기 총 10주간 진행하며, 그 밖의 과정의 수업운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업은 평일에 실시하되 오전과 오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휴강과 보강 및 특강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험 및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교과목 구성) 교과목은 한국어 회화, 듣기, 문법, 작문, 독해 및 한국 문화체험, 유학생할 교육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2.27.>

- 제19조(시험)** ① 정규과정에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정규시험은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24.02.27.>
 ② 시험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 강사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모의 한국어 능력인증시험, 수행평가 등 비정규 평가를 추가하여 학생의 성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02.27.>

- 제20조(출결 관리)** ① 지각은 수업 시작 10분이 경과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업을 시작하고 30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한다.
 ③ 한국어강사 출석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출석부를 확인하고 출석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한 경우 증빙서류(병원 진료기록, 타 대학 면접 확인서, 승차권, 결강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출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 제21조(분반 시험)** ① 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입학과 동시에 분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02.27.>
 ② 성적이 우수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일반 시험을 거쳐 월반할 수 있다.
 ③ 분반 및 월반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제22조(수료 인정) ① 학기별 출석률이 수업일수의 70퍼센트 이상이고, 시험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를 인정한다.<개정 2024.02.27.>

② 정규학기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또는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특별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3조(수강포기)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포기원(서식5호)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제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시키고, 입국 취소 또는 출국 조치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입학 및 사증 발급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인 경우
2. 취업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학습 부진 및 학업태도 불량 (무단결석 등) 등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4. 당해 학기 중 무단결석 수업시수가 40시간을 초과한 학생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6. 출입국관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 사유가 발생한 학생
7. 기숙사 의무 거주 기간 중 기숙사 퇴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개정 2024.02.27.>

제25조(납입금) ① 정규과정의 납입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특별과정의 납입금은 정규과정 납입금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은 납입금액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납입금은 매학기 개시일 전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각종 활동비의 징수와 정산)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된 활동비의 내역은 정산하여 공표한다.

제27조(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납입금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교육과정이 폐강된 경우
2. 입국 사증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적 처리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의 반환 금액은 국제교류원운영규정 제10조 4항 각호에 따른

	지침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다. 다만, 납입금의 반환 금액을 조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및 장학

제28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은 이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과 연구 등 이 대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입국 관련 법령 준수
2. 정해진 교육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

제29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① 원장은 품행이 불량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고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의결은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무단이탈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1.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제적된 경우
3. 무단이탈한 경우
4.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수료한 후 학과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재등록 하지 않는 경우


② 무단이탈한 학생의 잔여 교육비 등은 학생 소재 파악 및 귀국조치 등 관련 경비를 제외하고 우리대학교 대학회계(수입대체경비)에 귀속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 및 수강료 감면)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납입금 조달이 어려운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학업 성적 우수자는 한국어강사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선정한다.

③ 모범 학생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한국어강사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선정한다.

④ 장학금 지급 범위와 납입금 감면 범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지침	문서번호	TWI-C102	
		제정일자	2022. 09. 05.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개정일자	2024. 02. 27.	
		개정번호	2	페이지

제5장 재정과 회계

제33조(재정) 연수과정의 납입금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은 대학회계(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처리하고, 운영 경비는 국제교류원에 배정된 대학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34조(강사료) ① 연수과정의 강사료는 한국어강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한국어강사 중 대표강사와 분반별 담임강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표강사와 분반별 담임강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처리) 연수과정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36조(운영 세칙) 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